○ ○ ○ ○ (기 관 명)

제 0000-00000 호 0000.00.00.

수 신: 공소청의 장

제 목: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

아래와 같은 변사사건이 발생하였기에 「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」 제14조 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

발 견 일 시		
발 견 장 소		
신 고 일 시		
변 사 종 별	원 인	
	방 법	
변 사 자 인 적 사 항		성 명: 주민등록번호: 직 업: 주 거:
발 견 자 인 적 사 항		성 명: 직 업: 주 거: 변사자와의 관계:
발 견 경 위		

피 의 자 (피혐의자)	성 명: 주민등록번호: 직 업: 주 거:
사 인 및 의 사 소 견	직접사인: 중간선행사인: 선행사인:
사망추정시각	
사 체 의 상 황 (위 치, 착 의, 외상 유무 등 사체의 상태를 구 체 적 으 로 기 재)	
증 거 품 (소지품, 흉기등범행공용물, 유 서 , 일 지 등 존 재 사 항) 및 참 고 사 항	

유 족 의 진 술				
	진 술 일 시		변사자와 관계	
	주 소			
	직 업		주민등록번호	
	성 명		연 령	

관계인진술	진술일시		변사자와 관계	
	주 소			
	직 업		주민등록번호	
	성 명		연 령	
사건개요				
조치 및 의견				
담당 특별사법경찰관				

(기 관 명)

특별사법경찰관